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정기이사회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근대5종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를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명예의 전당에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헌액함으로써 근대5종 영웅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스포츠인의 사기진작 및 성취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대5종 영웅선정위원회) ① 연맹은 대한민국 근대5종 영웅 선정을 위해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에 대해 식견이 높은 스포츠계, 학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근대5종 영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7조 및 제39조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연맹의 상벌을 다루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운영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의 근대5종 영웅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6조(근대5종 영웅 선정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수, 스포츠 공헌자(지도자, 스포츠행정가, 스포츠언론인, 스포츠외교가 등)중 1명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근대5종 영웅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근대5종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위선양을 했거나 한국 근대5종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근대5종인들의 귀감이 되고 근대5종인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포츠인

3. 청소년 및 현역선수들의 역할 모델 기여도가 높은 사람

4. 선수는 공식 은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제9조제2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로 한다.

제8조(근대5종 영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9조(근대5종 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① 연맹은 해당 연도 근대5종 영웅 선정계획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추천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2. 추천단체: 각 시·도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3.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② 제1항의 각 추천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연맹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후보자 공고) ① 연맹 회장은 후보자 명단 및 업적자료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1조(이의제기) ① 공고된 후보자 업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고일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로 후보자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 평가)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후보자 추천 사유가 포함된 후보자 명단을 선정위원회에 제공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비공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국내 근대5종 발전 공헌도’, ‘국위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 모델로서의 상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근대5종인의 ‘지지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④ 연맹은 제3항의 지지도 평가를 위하여 연맹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을 활용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1. 정성평가(70퍼센트):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정량평가(30퍼센트): 지지도 조사 점수

제13조(근대5종 영웅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제12조제5항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70점 이상)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정한다.

2.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② 연맹은 근대5종 영웅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영웅의 전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지지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근대5종 영웅 선정 취소 등) ① 선정위원회는 근대5종 영웅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후 스포츠인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대5종 영웅 선정 취소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즉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 선정위원회는 취소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 참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단서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근대5종 영웅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근대5종 영웅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사업) 연맹은 영웅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영웅을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근대5종 영웅 명예의 전당(홈페이지) 운영

2. 근대5종 영웅 홍보 및 연수활동

3. 그 밖에 근대5종 영웅을 기리기 위한 사업

부 칙(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5. 3. 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의 영웅의 명예의 전당은 연맹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로 운영하고, 영웅의 명예의 전당 헌액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게시한다.

② 2025년 정기이사회에서 동 규정 승인과 함께 금번에 한해 정성평가(7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영웅을 선정,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2인 이상을 영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

정성평가(업적평가)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배점											
정성 평가 (70%)	① 국내 근대5종 발전 공헌도	지속성	○ 스포츠 활성화 및 대중화 기여도 ○ 후진양성 및 교육, 사회발전 기여도 ○ 경기력 향상 및 행정, 재정기여도 <table><tr><td rowspan="2">배점척도</td><td>S</td><td>A</td><td>B</td><td>C</td><td>D</td></tr><tr><td>25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d>5점</td></tr></table>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25점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② 국위선양 공헌도	공헌성	○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활약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스포츠 위상 기여도 ○ 한국 체육사의 국가 위상 기여도 ○ 국내 스포츠인들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table><tr><td rowspan="2">배점척도</td><td>S</td><td>A</td><td>B</td><td>C</td><td>D</td></tr><tr><td>15점</td><td>12점</td><td>9점</td><td>6점</td><td>3점</td></tr></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③ 사회적 역할모델로서 의 상징성	능동성 /상징성	○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헌신도 ○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상징성 ○ 사회적 모범 인물로서의 지속적인 품위 유지 및 영향력 <table><tr><td rowspan="2">배점척도</td><td>S</td><td>A</td><td>B</td><td>C</td><td>D</td></tr><tr><td>15점</td><td>12점</td><td>9점</td><td>6점</td><td>3점</td></tr></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④ 환경적 제약 극복	신뢰성 /극복성	○ 환경적 제약 극복을 통한 본인 및 해당 종목(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기여도 ○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문화 형성 기여도 ○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역사 개척도 <table><tr><td rowspan="2">배점척도</td><td>S</td><td>A</td><td>B</td><td>C</td><td>D</td></tr><tr><td>15점</td><td>12점</td><td>9점</td><td>6점</td><td>3점</td></tr></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소계				70점											

[별표 2]

정량평가(지지도 조사)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평가 항목	중점사항	평가 고려사항			배점
정량평가 (30%)	인지도	○ 지지도			30점
		배점 척도	100명 이상 참여		
			30점	$\frac{\text{참여자 수}}{100\text{명}} \times 30\text{점}$	

[별표 3]

근대5종 영웅 선정

구분	내용	
추천권자	○ 추천권자 :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 체육단체 : 시·도 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서면) 추천권자
	↓	
	후보자 평가	☐ 정성평가(70%) : 선정위원회 ☐ 정량평가(30%) : 지지도 조사(홈페이지 및 SNS)
	↓	
	근대5종 영웅 추천대상 선정	☐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합산점수(70점이상)를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근대5종 영웅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